인사모 1회 모임 정리

참가(가나다순): 강○○, 김○○, 김○○, 김○○, 김○○, 박○○, 박○○, 사○○, 송○○, 신○○, 이○○, 이○○, 이○○, 이○○, 정○○(이상 15명)

사회: 박○○
반대 발제: 이○○
찬성 발제: 이○○
반대 추가 토론: 김○○
찬성 추가 토론: 김○○
정리: 박○○

[반대발제 주요 내용] - 별도 발제문 사용
상고법원(안)의 개요(필요성의 논거,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구성 및 운영방안),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상고의 주된 이유는 사실심에서의 심리절차에 대한 불만족과 판단결과에 대한 불복, 상고심에서의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감,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실문제를 통해 사실심의 판단을 번복하고자 하는 기대감 등일 것이다. 사실심의 심리미진이나 부실이 상고사건 증가의 원인이라면 사실심 강화를 통하여 상고사건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오히려 상고법원 설치는 사실심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사법부 인적 구성 및 가치의 다양성 부족, 사법관료주의의 심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사실심 개입과 전관예우 기대감이 상고사건의 증가를 자초하고 있는지 살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상고법원의 문제점(추진절차상에 국민과 일선법원이 없는 문제점, 실익이 없고 판례위반을 주장하며 특별상고를 할 것이므로 남상고의 우려가 있고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의 양산, 특별상고가 폭증할 경우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이 분류되는 문제. 사실심 약화의 초래.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의 불명확. 상고법원으로서는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 시의적절한 판례변경의 기회를 놓칠 우려. 고위법관에 치중된 제도 추진. 민주적 정당성 확보 절차가 없거나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 인사권자의 의중만이 사법부의 정의로 오인되는 등 사법부 구성 및 판단에서의 관료화 심화 및 수직적 계층구조 형성)(35분 정도 소요)

[찬성발제 주요 내용] - ○○ 실장이 작성한 기존 글 참조
상고법원 안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 온 연혁에 관하여 간단히 발제[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법원도 미국 대법원처럼 운영(현재 '정책기능'이라고 논

의되는 것으로 보임 - 기록자 생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대법원은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었다. 청와대의 지원 아래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거치면서 대법원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등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이 마련되고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이 상고부 건물 예산으로 건축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고등법원 상고부 안과 상고법원 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당시 고등법원 상고부 안을 대체로 찬성하였던 사람 중 진보적 인사들은 상고법원 안을 반대하지는 못하고 대법원의 다양화를 조건으로 내거는 정도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재야에서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법원은 상고법원 안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커지는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고등법원 상고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원 내의 반발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상고법원 안에 대한 법원 내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분 정도 소요)

[반대 추가 토론]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전혀 없는 등 문제가 있는바, 판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관협회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찬성 추가 토론]
현재 대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전원합의체 사건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양○○ 대법원장 취임시 전원합의체 100건을 공언하였으나 20건 정도에 불과한 현실이다. 상고법원 추진에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과 비교하여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미미하다는 보이지 않는 위기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고법원이 설치될 경우 심리불속행 제도가 폐지되기는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따르면 상고법원 판결 역시 심리불속행과 유사하게 간단하게 작성할 것이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하급심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원행정처가 국민과 법원을 기망하는 것이다.

[전체 토론]
- 대법원이 권리구제기능을 상고법원에 넘기는 경우 정책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 현재의 대법원은 대법관 14명이 아니라 대법원장 1명이다. 인적구성의 다양성 없이 지금처럼 획일적 사고를 하는 대법관만 뽑아두고 정책법원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정책법원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하드케이스가 얼마나 되는가. 만일 그런 하드케이스가 없다면 정책법원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 ○○ 실장의 글에 따르면 170건 정도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하드케이스라고 하면서 전원합의체로 가야 한다고 한다.
- 제도를 누가 추진하는가도 중요하다. 고등법원 상고부 추진 당시에는 대법관 다양화를 전제로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직적 관료적 사법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대법원의 업무를 덜어내려는 것이다. 상고법원제도는 헌법이 예견하지 않은 가장 과격한 안(가장 덜 과격한 안은 상고허가제)이고 사실상 4심제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고법원제는 대법원 개혁을 인정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을 폐지하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된다는 하지만 심리불속행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상 미끼에 불과하고, 단지 사건을 떼어내기 위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다양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풍부한 소수의견이 없이 13대0으로 하는 전원합의체는 정책법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볼 때 정책법원은 공허하고 권리구제는 환상이다. 대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내걸고 있는 상고법원의 조건 등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헌법재판소와 달리 법원의 역할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권리구제이고 대법원의 법령해석은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법령해석이지 나라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책법원이라는 용어는 본질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용어로서 선언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 억지 주장에 대하여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것이 본질인데 대법원은 그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고 있다. 3기수 정도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말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을 비합리적 주장에 쏟는 것을 막으려면 상고허가제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상고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대안이 있다.
- 과연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원은 87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노무현 정권때 사개추위가 생기는 과정에서 정책법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니까 정책법원화 하겠다고 주장하는 재미난 현실이 발생한 것이다. 대법관들은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등으로 대법원이 헌재 밑으로 들어가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대법원이 권리구제만 하고 정책법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책법원에는 동의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개인적인 권리구제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그 판결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고 헌법은 헌법재판소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석으로 기준으로 법원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대법원이 사건이 많아 이러

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고허가제도 사실은 모든 사건을 다 심리하여 상고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인데 심리불속행도 그와 같이 운영하면 되는 것임에도 대법원이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자초한 면이 있다. 따라서 지금 제도에서도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상고법원은 아닌 것 같다.

- 상고허가제와 심리불속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를 떼어두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책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즉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이다.
-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제시하고, 만일 국회가 요구하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텐데, 그러면 오히려 극우적 인사가 대법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
-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 전원합의체 같지 않은 사건, 예컨대 13대0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을 제외하면 지금 진정으로 전원합의체 같은 사건은 2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된다.
-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많은 하급심에 영향을 미칠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를 열어 공개변론을 하여 하면 좋을 것 같다.
- 대법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런 다양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발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 대법관들이 평생을 사실심을 하던 사람들이라 법률심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아 심불 사건도 꼼꼼히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의 심불이 상고허가제처럼 운영되지 못하고, 대법관 임기가 4년 쯤 되면 비로소 능력이 생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 모두 동의하는 것인가?
- 대법원이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하다는 것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 뜬금없이 행정부 식으로 정책법원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권리구제사건을 떼어내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양면인데, 정책기능을 강조하면 권리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지 않나? 형사 성공보수금 사건과 같은 경우 심불로 올라갔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판례변경이 되지 못할 수 있지 않나? 정책기능과 권리구제기능은 같이 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떼어내기는 문제가 있다.
- 전원합의체 많이 한다고 정책법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13대0만 나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정책법원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내용의 의견이 나와야...
- 정책법원의 역할은 헌법재판소가 하면 되고, 대법원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

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 상고허가 요건과 심리불속행 요건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심리불속행을 엄격히 하면 상고허가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 그렇다.
- 심리불속행을 상고허가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대법원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옳은 것인가?
- 심불 요건에 맞추면 심불이 80%는 되어야 하는데, 60~70%만 되도 못견디고, 전관예우나 고위법관의 압력에 못 견딘다.
- 신건조에서 심불 기준이 1심과 2심이 다른 경우, 3억 이상이면 안되고, 대형로펌이 3억 이상에 다 뛰어들고, 상고허가제처럼 갈려면 대법관들이 심불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대형로펌과 전직 대법관이 들어오고 소가가 100억 이상 되면 부담되어서 심불 못한다. 상고법원이 되면 심불 사건 다 써주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고안하겠다고 한다.
- 상고법원이 생기면 압력에 따라 종래 심불사건도 길게 쓸 수밖에 없다.
- 행정처가 여기서 판사들에게 하는 말이랑 밖에 가서 하는 말이 다르다. 판사들에게는 업무량이 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자세히 써 줄 것이라고 말한다.
- 상고법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것인데, 판결문을 자세히 써서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권리구제 해 주겠다고 했는데 파기율이 낮거나 판결문이 간이하면 외부에서 비판이 나올 것인데, 상고법원을 성공적이라 할려면 결국 파기율을 높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판결도 자세히 쓸 수밖에 없을거다.
- 그러면 또 상고가 늘게 될 것이다.
-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된 과정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법원은 사실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안을 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안 문구를 수정하면서 사실문제를 건드리도록 바꾸었기 때문에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사실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 국회에 법안을 올릴 때는 추가 인력 및 예산은 필요 없음이라고 올렸고 판사들에게는 업무량은 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판결 이유를 자세히 써 준다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고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쳐야 하는 것이다.
- 그건 다 거짓말이었다.
- 결국에는 사실심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상고법관들이 대법관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파기도 2~3배 하고, 판결도 많이 쓸텐데, 그러면 법관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될텐데, 노령화되면 문제가 크다.
- 심리불속행 제도의 국회 통과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이다. 원칙이 상고허가제라면 상고법원을 하기 위해 심불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적체 해소와 판사들의 통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해서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다.

- 곧 지방부장이 될 재판연구관들을 심불 사건 처리하라고 상고법관 보내는 것에 대하여 재판연구관들이 불만이 있다.
- 모 대법관은 상고법원이 되지 않으면 심불을 심불에 맞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데, 그렇다면 심불제도를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심불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심불제도 위헌이 나올 수 있다. 예전에 5:4로 합헌이 난 사실이 있다.
- 행정처는 판사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시각에서 생각해야지 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 상고법원은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국민들의 비용이나 고통이 더욱 가중되게 된다. 결국 4심까지 가게 되는 것이니까 1심에서 당사자들의 재판 성실도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차이에 따른 재판청구권 실현에 차등이 생기게 된다. 결국 국민들의 비용으로 변호사들의 시장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내부에서는 인사적체 해소가 되는 것이다.
- 국민들이 법원 내부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된다.
- 작년에 법관 350명 증원안이 통과되었는데, 인원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와 같은 증원으로 충분히 해소된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이다.
- 1심 증가율보다 상고사건 증가율이 높은데, 정말 하급심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 1심 중 합의 사건 증가율과 상고 사건 증가율을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1심은 대부분이 단독인데 금융기관 단독 사건 등이 갑자기 늘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합의부 사건의 증가율이 중요하다.
- 서기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 대법원장 시절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주의를 한 사건이 상고될 무렵의 통계는 상고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므로, 그런 면에서는 사실심을 충실화하면 상고사건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 하급심이 충실화되더라도 변호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상소사건이 주는 것은 어렵고 유일하게 유의미한 통계 수치는 조정과 화해이다. 이는 상소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 실장은 상고법원과 하급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급심 강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상고법원을 하면 하급심이 오히려 약화되기 때문이다.
- 그런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판사 증원으로 해결되므로 사소한 문제인 것이 아닌가?
- 그러니까 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약화, 상고법원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상고법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므로,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진다.

- 상고법원까지 가고자하는 국민의 욕구 때문에 사실심의 약화는 필수적이고 병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 동료 법관들이 상고법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사법관료화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 예전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는 이렇게 과감하게 상고사건을 떨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 상고부 안은 법률에서 일정 사건을 대법원 사건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대법관들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거나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상고부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것이었는데, 민사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대법원 사건을 나누는 것은 문제이다. 작은 사건도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이다.
- 법률에 따른 상고 이외에 수리상고라고 하는 보충적 제도가 있었다.
- 상고사건이 많아지는 것은 1심과 2심이 빨리 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결국 상소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최종심까지 가게되는 것이지, 우리 국민이 상소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 행정처가 김○○ 부장에게 대안을 요구한바, 부장님은 연구관을 반으로 줄이면 대법관들이 힘들어서 심불을 심불답게 운영할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 “판단의 관료화”가 문제이다. 상고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반할 수 없으므로 하급심 판결도 결국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의 현안(상고법원 등) 추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못하였다.
- 추진 절차도 중요한 포인트이고, 인사권자가 판사들 승진 단계를 세분화하여 통제하는 문제, 고등 대등부를 무효화하고 고등을 지방법원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상고법원을 고등법원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점 등 논의할 부분이 많은데 다 다루지 못했다.
- 16명까지 대법관을 증원하면 전원합의체에 어려움이 없고 사건 감소 효과도 만들 수 있다.
- 3명을 더 늘이는 것으로 사건이 줄어들 것인지 의문이다.
- 증원을 하더라도 저절로 다양화 되는 것은 아니고, 1명씩 뽑는 방식을 4명씩 뽑는 방식으로 바꾸든지 하여야 다양화 될 수 있다.
- 현재 상태에서 폴을 한 결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 10명,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의견 6명, 상고법원 등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1명.